

논단

■ 인권의 개념

조태훈

인권의 개념*

조태훈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thcho@chungbuk.ac.kr)



I. 머리말

21세기에는 인권담론이 최대의 화두로 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불가양도성, 인간은 목적 그 자체라는 믿음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사람다움과 서로간의 인간적 대우, 그리고 삶의 질 고양을 더욱 요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¹⁾ 196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산주의를 타도한다는 명분하에 50만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하였으며, 캄보디아 폴 포트의 크메르 루즈 정부는 20만~30만의 국민을 죽였다. 197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의 군사 정부 하에서는 9천명 이상의 국민이 실종되었다. 1972~78년 사이에 우간다의 이디아민 치하에서는 25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으며, 1980년대의 이라크에서는 보안군에 의해 수십만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1980~92년 사이의 내전동안 엘살바도르 주민의 거의 20%가 실종되거나 정치적으로 살해되었다...

이 목록은 실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르완다, 보스니아, 체첸공화국, 코소보, 동티모르 및 다른 많은 지역들에 관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 럼멜(R. J. Rummel)의 계산에 따르면²⁾, 20세기에 최소한 1억6천9백2십만2천명이 정부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의 추정으로는 1945~1990년 사이 4천5백만 명의 정치적 살인이 자행되었다.

이들 사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과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정치, 더 나아가 공권력과 인격, 폭력과 평화 따위를 심각히 되짚어보게 하면서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도록 한다. 인간의 존재차원이 여타의 존재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인간은 자신의 존재자체만으로도 기능하기 어려운 본유의 권리를 지닌다는 존엄의식이 아닌가? 인간이 갖는 본유의 권리란 어떤 것인가? 달리 말해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로서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일견 인권은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제도와 규율에 대한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장치로 여겨진다. 우리가 인권에 관한 담론을 이해하고자 하면 먼저 인권 개념에 대한 분석적 파악이 필요하다. 개념이해는 개념분석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 특히 인권의 철학적 토대를 찾는 일이 인권담론을 위한 선결적 요건으로 보인다. 논자의 주제의식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인권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대를 마련해주는 서로 다른 철학들은 인권수행의 적합한 한계 및 서로 다른 인권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불일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더라도 왜 인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일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인권개념의 분석은 자연스럽게 인권이론으로 확대될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통상 “인권이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³⁾라고 규정되곤 한다. 이 규정의 타당성 여부는 차차 음미해 보겠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권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차원 또는 영역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1)인권개념의 역사적 연원, (2)인권의 본성, (2)인권의 인간학(인성론)적 원천/토대가 그것이다. 특히 인권의 원천으로 되는 마 인간본성을 특성화하는 데서 빚어지는 시각차로 인하여 인권에 대한 사상적 이해가 서로 달라진다. 논자는 인권개념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나아가 특히 인권의 원천/토대, 즉 인성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로부터 초래되는 상이한 인권이론들을 살피고, 세계 인권선언에 개괄되어 있는 인권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덕적 및 정치적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Amnesty International 1993:2, Michael Freeman, Human Rights, (Cambridge: Polity Press, 2008), pp.1-2

2) R. J. Rummel, Death by Government,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4),chap.,1-2

3) Jack Donnelly, The Concept of Human Rights, (NY: ST. Martin's Press, 1985), p.1

II. 인권개념의 역사적 연원

인권이란 말의 뜻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인권논의에서 인간이라는 것과 인권을 갖는다는 것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금까지의 일반적 합의에 근거해있는 인권의 특성⁴⁾부터 알아보자. 인권은 평등한 권리이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은 다른 모든 인간들과 더불어 동일한 인권을 가지나 인간 외의 존재들은 전혀 인권을 지니지 못한다.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악한 짓을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야만스러운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오늘 현재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종의 모든 성원들을 ‘인간’으로, 따라서 인권의 소유자로 보는 점에서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성’, ‘양도불가능성’, ‘보편성’은 인권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이란 권리며 그것이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권개념을 그 구성요소에서 보면 ‘인간’과 ‘권리’로 분해된다. 인권을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권리로서의 인권, 즉 인권의 본성을 해명할 수 있고 인간이라는 측면에다 시선을 맞추면 인권의 원천/토대에 대한 관측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서는 우선 이들 작업을 위한 예비조치로서 인권개념의 역사적 전개를 추적하고자 한다. 현상과악을 위해서는 그 간의 역사적 경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우리에게 있어 인권개념은 매우 친밀하고 익숙해져 있다. 이전 세대들도 우리와 같은 형편이었는가?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문화에 인권개념이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⁵⁾ 이를테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재산권을 내포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다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전적 그리스에 있어 법률적 논의들은 당사자들의 권리보다는 공동선과 관련하여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F. Miller)는 ‘시민의 권리’ 개념, 특히 정치적 참정권 및 재산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⁶⁾

인권개념은 상대적으로 근대정치의 산물이지만 그것의 발전은 고대와 중세의 중요한 정치사상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⁷⁾ 이러한 사상들 중 가장 중요시 할 수 있는 하나는 도덕적 이성의 보편성에 대한 스토아 사상의 믿음이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도덕적 평등을 역

설하며, 인간은 다른 모든 인간에 대해 정치적 책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들은 이성에 의해 모든 사람들과 결합되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책무는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도시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동체로 확대된다. 도덕적 이성의 보편성 및 세계적 공동체의 우선성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아 사상은 17세기에 최초로 자연권 개념을 낳게 되는 자연법 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개념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 및 세속적 의무의 제한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사상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의 모상에 따라 피조된 것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신의 궁극적 선물, 즉 예수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한다. 또한 기독교는 신이 모든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초월적 도덕질서를 확립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복음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카이사르에게 속하는 것은 카이사르에게, 신에게 속하는 것은 신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두 영역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 사람들은 인간의 권위보다는 신에 복종해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보편적 자연법 개념을 가졌으나 자연권 개념은 갖지 않았다. 중세에 이르러 기독교 신학의 구조 안에서 보편적 자연권 개념이 출현할 수 있었다.

흔히 인권개념의 기원⁸⁾은 17세기 영국 부르주아 계급 또는 절대군주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재산상의 이득’을 옹호한 이데올로기에서 발견된다고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부정확하다. 티어니(B. Tierney) 같은 사람은 그보다 수세기 전의 중세 사상에서 자연권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중세의 법률은 분명히 재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당시의 모든 권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재산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예로, 마그나카르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마련해준다. 중세 기독교의 자연권 이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생존’ 권에 관련되었다. 그 때의 논의들은 라틴어로 행해졌는데, 라틴어에서 ‘재산’ 개념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키며, 거기에는 자신의 생명과 자유가 포함되었다. 우리는 로크(J. Locke)의 정치철학에서 이러한 중세 후반의 권리관을 보게 되는데, 로크는 최초의 근대 자연권 사상가였으나 그것은 자연권에 대한 중세적 견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자연권에 대한 체계적 이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개념이 부르주아의 개념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많은 것이나 보다 분명한 것은 17세기 및 18세기의 자연권 개념이 절대군주에 대한 반대, 신생자본주의, 반체제적 프로테스탄티즘 또는 세속화된 정치사상과 연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주제들이 17세기의 영국혁명과 18세기 후반의

4)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10

5) Michael Freeman, (2008), p.117

6) Fred Miller, *Nature, Justice, and Rights in Aristotele's Politics*, (Oxford: Clarendon Press, 1995). 특히 chap. 2.

7) Mark R. Amstutz, *International Ethic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9), p.72

8) Michael Freeman, (2008), pp.168-171

9) B. Tierney, *The Idea of Natural Right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7), p.168

미국 및 프랑스 혁명에서 세계적 단계로 분출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폭력적 무질서가 파괴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으로서의 자연권 개념을 공격목표로 하는 강력한 철학적 반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자연권 개념은 추정적인 신의 의지와 이성이 우리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개인들의 자연권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자연 안의 신적 의지로서의 로고스와 인간의 이성은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권에 바탕을 둔 고유의 인간적 권리, 즉 인권을 갖게 된다.

18세기와 19세기의 과학철학은 개인들의 자연권 개념을 약화시켰으며 그것을 사회에 관한 과학(사회학)으로 대체시켰다. 상 시몽, 콩트,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 등은 이런 발전의 리더들이었다. 권리는 더 이상 정치생활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도덕이념이 아니고 사회적 투쟁 또는 사회도덕의 이데올로기적 산물이었다. 사회과학들은 권리개념을 경시하였다.

1945년 이래 인권개념과 사회과학이 함께 번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서로 독립적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특히 냉전 종식 후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에 있어 인권개념의 영향력 증대는 일부의 사회 과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난 50여 년 동안의 주요한 사회발전을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근자에 이르러 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개념, 이론, 방법을 인권과 그 침해의 실제 세계에 적용하고 있다.

1948년 UN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인권에 관한 표준마련(국제적 인권법)과 제도구축의 과정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공산정권들이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송두리째 침해하고, 서방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반공 독재정권의 지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연루됨으로써 냉전이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았다. 많은 나라들이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위배한 다수의 기록들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성공적으로 옹호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반인종주의는 원칙상 서구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기반이었으며,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이 한 국민국가 안에서의 인권침해는 국제공동체에 의해 적절한 조사를 받거나 비난 또는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길로 이끌었다.

1948년 이래의 인권진보는 일련의 주요한 이정표를 갖고 있다.¹⁰⁾ 1961년의 국제사면위원회 창립, 1966년의 두 가지 UN협약, 1975년의 헬싱키협정-이것은 공산진영에다 인권압력을 가하였다, 1970년대의 지미 카터 미국대통령의 인권외교 정책, 1980년 중반 이래의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여러 나라(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민주화, 1993년의 비엔나 협정 등. 1980년 말의 냉전 종식은 모순되는 결과를 빚어내었다. 한편으로는 이전의 공산주의 사회들에서 자유화가 진척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나라들에서 폭력적인 인종-민족주의적 갈등이 노정되었다. 20세기 말경에 이르러 인권개념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되었다. 많

10) Ibid., p.170

은 나라들에서 실질적인 인권의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세계에는 아직도 암울한 인권침해를 야기시키는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인권을 위한 노력과 투쟁이 승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부 사상가들은 인권이 서구적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개인적 권리라는 사상은 유럽 정치의 역사적 산물이며, 서구의 정치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이 분명하다.¹¹⁾ 인권개념의 역사는 비록 서구적인 것이지만 인권개념 자체는 보편적인 것이다. 인권 사상의 등장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서구 사상들 중의 일부는 다음의 것들이다.¹²⁾ (1)초월적인 도덕질서가 존재하며 그것의 규범들은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인권은 창조적 자연질서의 일부이다. (3)인간존재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4)인간존재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인권은 인간본성에 관한 도덕적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권개념은 그 출발에서부터 윤리적 개념, 즉 도덕에 바탕을 둔 주장이다.

III. 인권의 본성

인권의 본성은 그것이 권리라는 사실이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개념은 옳음(정당함)과 밀접히 연결되어있다. 어떤 것이 옳음의 기준에 부합하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모든 사회들은 옳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개념을 지니지 않은 문화들이 많다고 한다. 인간은 모두가 인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특히 대부분의 문화들에 생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킨타이어(A. MacIntyre)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믿음은 마녀와 일각수에 대한 믿음과 같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미신이라는 것이다.¹³⁾

인권을 마치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갖듯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 점에 매킨타이어의 잘못이 있다. 이 잘못은 권리라는 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권리 소유를 마치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 권리란 기묘한 성질을 지닌 신비스러운 '무엇'이 아니라 도덕적 및 법률적 규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당한 요구 또는 자격이다. 권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인권에 대한 믿음이 미신이라는 매킨타이어의 입장을 거부한다.

인권개념은 종종 그것이 개인주의적이고, 책임보다는 오히려 권리를 강조하며, 이기심을

11) Jack Donnelly, (1985), p.50.

12) Mark R. Amstutz, (1999), p.72

13)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INC: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p.67

고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로크의 고전적 자연권 이론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자연법에 바탕을 두었다. 인권개념이 이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측면으로 보면 모든 개념은 오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의무개념은 힘있는 사람이 약자를 조종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반면에 권리는 종종 타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옹호한다. 그러한 경우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으며, 기워드(A. Gewirth)는 인권개념이 인권을 유지시켜 주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수반한다고 주장한다.¹⁴⁾ 인권개념이 탈사회적 개인 개념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인권개념은 우선적으로 정당한 통치권 이론의 토대이다. 따라서 인권개념은 탈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정치적 개념이다.

이상과 같은 인권개념에 대한 기본 이해를 근간으로 하여 인권의 본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¹⁵⁾

인권주장은 권리의 영역에서 최종적 의지처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처럼 미국에서 직업상의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는 몇 가지 단계적 근거에 의거할 수 있다. 먼저 고용계약에 의거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으로 지방의 조례나 혹은 국가의 비차별에 관한 법령에 호소할 수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의 법령과 헌법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적으로는 국제적 인권요구에 의거할 수 있다.

인권주장은 특성상 현존하는 제도, 관행 또는 규범, 특히 법적 관행에 대한 도전 혹은 변화를 추구한다. 인권주장은 단순히 열망, 암시, 요청, 훌륭한 생각의 표현 등에 그치지 않고 권리에 기반한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권주장은 그에 버금가는 법적 권리를 확립(또는 그것의 보다 효과적인 강제를 결과)하고자 한다. 예컨대 건강관리에 대한 인권은 전형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법적 권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끈다.

일련의 인권들은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세계 인권선언은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을 위한 성취의 표준으로 들어난다. 정부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그들 정부는 정당성을 갖는다.

인권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권리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며, 자신들의 권리(의 대상)를 향유하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한다. 인권이 단순히 '선언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권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선언을 함축하고 있다. 인권주장은 우리가 그에 부응하는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거나 또는 향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더불어 그것은 또한 우

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일깨워준다. 법률적 권리를 뒷받침해 주는 다른 근거들, 이를테면 정의, 유용성, 자기이익, 자선 등과는 대조적으로 인권요구는 우선적으로 도덕적(및 국제법적) 권리에 의거한다.

인권은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법적 권리가 기존의 법적 자격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적 요구들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데 비하여 인권은 현존하는 법률적 자격을 강화하거나 또는 부가하는 도덕적 요구들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처럼 법적 권리와 인권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본성을 지닌 인권이 여타의 권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선 인권은 '특별한 종류의 권리'¹⁶⁾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은 흔히 특정 사회들의 법률이나 관습으로부터 비롯되는 '법적' 원리 또는 '시민' 권과 대비된다. 도넬리(J. Donnelly)에 따르면 인권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이다. 이는 매우 불만스러운 개념규정이다. 우리가 왜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갖는지가 분명치 않다. 우리가 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는지는 특히 불분명하다. 예컨대 세계인권선언의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제21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의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성인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 즉 아동들이나 외국인은 통상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인권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일 수는 없고, 특히 정치적 권력 남용에 대항하여, 도덕적으로 타당하며 근본적인 인간의 편익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예외적 중요성을 지니는 권리이다. 일부 이론가들은 인권의 현실적 사례들에 언급하면서 강제할 수 없는 권리는 전혀 권리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편견이다.¹⁷⁾ 권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어도 어떤 것에 관한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나치정권하의 유대인들은 강제할 수 없는 많은 도덕적 권리를 소유하였다. 지금 강제할 수 없는 도덕적 권리에 대한 인정은 그것들이 장래에 강제되도록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IV. 인권의 원천/토대

인권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권리' 쪽으로부터 다른 요소인 '인간' 편으로 시선을 옮기면 인권과 인간본성 간의 결합관계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인권은 어디로부터 도출되

14) Alan Gewirth, *The Community of Righ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80

15) Michael Freeman, (2008). pp.12-13

16) Ibid., pp.60-61

17) Ibid., p.62

는가”를 묻는 인권의 원천/토대에 관한 논의를 요구한다. 법률적 권리는 법률을 그 원천으로 갖는다. 계약은 계약상의 권리를 낳는다. 인권은 인간 또는 인간의 본성을 그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권리에 있어 우리는 그것에 의해 권리가 창출되는 기체로서 제정법이나 관습법을 지적할 수 있다. 계약상의 권리는 계약행위를 그 원천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어떻게 권리가 나오는가? 역사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칸트, 키에르케고르, 니체, 밀,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개괄되어있는 경쟁적 견해들만을 보더라도 그들은 각기 권리소유의 준거 또는 권리의 원천을 이성, 종교, 권력, 유용성, 경제적 계급 혹은 역사에서 찾거나 또는 그런 것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 이론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1. 기워드의 ‘주체적 행위’론

기워드는 인권의 원천/토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최근의 입장들을 정리한다.¹⁸⁾ 첫째, 직관론이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며, ‘세계 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권리들은 자명한 것들이다. 이러한 이해가 지니는 문제점은, 다른 종류의 직관론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주장 역시 직관들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에는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론이 있다. 권리는 약속이행의 경우처럼 제도들이 지닌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규칙에 기반을 둔 거래로부터 생겨난다는 제도론의 입장은 일부의 제도들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제도상의 또는 거래상의 규칙이 권리의 근거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난점을 지닌다.

셋째, 욕구론이 있다. 사람들은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전통적 권리 이론으로 ‘욕구권리설’과 ‘의지권리설’이 공존해 있는데, 전자는 인간의 욕구에서, 후자는 행위자의 의지에서 어떤 두드러진 법률적 또는 도덕적 지위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욕구론의 경우 그것은 기껏해야 권리소유를 위한 필요조건을 가리켜 줄 뿐이다. 만약 어떤 욕구 X를 소유함이 X에 대한 권리를 산출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인간에게는 욕구중대에 따라 관리하기 어려운 양의 권리중대가 빚어질 것이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이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그들이 고유한 가치 또는 존엄성을 갖기 때문에 또는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또는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정당화 되어야 할 주장을 단지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어떤 맥락에서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간의 강력한 관계가 간과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지위가 이러저러한 사회정치적 제도에 의하여 공략당하거나 혹은 침해당하더라도 인권이 표명하고 또 옹호하는 것은 인격으로서의 그들의 존엄성이다. 인권은 주체적 행위 및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행위의 필요조건인 자유와 안녕을 그 대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자로서의 자신들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사실상 자신들의 모든 개별적 자질들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 말하는 무지가 독자의 합리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다섯째, 롤즈(J. Rawls)의 이론인데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각자의 개별적인 모든 자질들을 무지의 베일로 가린 채 자기들 사회의 헌법구조를 선택하게 된다면 각자는 분명코 기본권을 확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 이론이 정당한 해답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본다면 순환논증에 빠질 것이다. 그 논증은 자신들의 모든 개별적 자질들에 대해 공히 균등하게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평등성을 전제로 할 때만 그것의 평등주의적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실상 자신들의 모든 개별적 자질들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 말하는 무지가 독자의 합리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더욱이 실제의 합리적 정보를 지닌 사람들이 왜 그러한 무지로부터 오는 평등한 도덕적 권리의 원칙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 같은 견해들에 대한 비판적 정리를 통하여 기워드는 자신의 인권개념 및 그 원천을 해명하는 데로 나아간다. 기워드에 의하면¹⁹⁾,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갖는 권리이다. 인간만이 인권을 갖는다. 또한 개별적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개인만이 인권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집단들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권리를 갖지만 그것들은 인권이 아니다. 나아가 인권은 인간행위의 필요조건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권리이다. 달리 말해서 인권이란 인간의 행위가 전적으로 가능하기 위해 또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그러한 조건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도덕 논의에 있어 인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른 모든 도덕적

18) Alan Gewirth, Human Rights: Essays on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 (Chicago of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43-46
조태훈, “공동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 윤리학회, 『윤리연구』, 제75호 (2009), pp27-29

19) Alan Gewirth, Ibid., Part I: Essays on Justification

고찰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인권은 그같이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인권의 대상은 합목적적 인간행위의 필요조건이며, 인권의 정당성은 이들 필요조건이 인권의 대상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 이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행위자에게 있어 인권의 대상은 '필수적 자원', 즉 그가 전적으로 행위 할 수 있기 위해서, 또는 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일반적 성공기회를 갖고 행위 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하는 자원이다. 그것은 곧 합목적적 행위의 필요조건인 자유와 안녕이다.

인권을 인간행위의 필요조건에다 정초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권리의 궁극적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도덕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내는 데 있다. 모든 인권, 즉 자유뿐만 아니라 안녕에 대한 권리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주체적 행위에 의존해 있는 수동적 수신자와는 반대로,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스스로 조정하고 스스로 발전해가는 행위자라는 의미에서 합리적 자율성을 지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리가 타인들로부터의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도 그들의 지향은 의존성을 강화 또는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적 행위자로 되도록, 즉 타인의 지배나 타인의 위해를 받음이 없이 자신들의 생활을 조정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체적 행위는 인간 존엄성의 형이상학적 기반이며 도덕의 바탕이고 또한 인권의 원천이다.

2. 도넬리의 '도덕적 본성' 관

도넬리는 근래에 이르러 많이 운위되고 있는 '욕구인권론'을 비판적으로 음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1) 욕구인권론

욕구인권론이란 인간의 욕구가 인권의 원천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욕구가 인권을 확립한다."²⁰⁾ "인간의 기본욕구가 논리적으로 권리를 낳는다."²¹⁾ "본능적인 기본욕구...를 권리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율적이다."²²⁾ "(인권은) 규범수용자가

다른 사람들 일반, 특히 다른 사람들의 욕구충족과 관련하여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다."²³⁾

물론 모든 욕구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²⁴⁾. 예컨대 "자동차에 가스가 필요하다", "다소간 좌측으로 갈 필요가 있다", "소스에는 보다 많은 향이 필요하다" 등에서 보듯 필요가 반드시 권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람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여 모두가 의도적 의미에서 인간의 욕구인 것은 아니다. 타당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욕구는 단순한 소망, 욕심, 이해관심이 아니라 '기본욕구'이며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보편적 욕구'이다.

기본욕구와 인권과의 연결은 자주 철학적 전제로 등장되곤 하지만 그 관련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다. 욕구인권론자로 잘 알려져 있는 베이(Christian Bay) 역시 욕구와 권리를 이어주는 여하한 종류의 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매슬로우(A. Maslow)는 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일정한 가치를 함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가치일반을 넘어서 권리 및 인권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 달리말해서 그는 "X는 인간에 있어 좋은 것이다"와 "X에 대한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 간의 논리적 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욕구가 인권의 기반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욕구이론은 인권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에 적합한 인간 본성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욕구에 대한 단순한 조작적 정의는 "X가 A의 적절한 기능작용에 본질적일 때, 오직 그 때에 A는 X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매슬로우처럼 인간욕구의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면 문제가 생겨난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욕구목록은 간략하고 또 구체적일 수 있다. 예컨대 최소한의 음식에너지, 단백질, 수분 및 기타영양소, 피난처, 동료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인권의 원천으로서 분명코 적합하지 않다. 그것들은 삶의 질보다는 삶의 유지에 전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매슬로우가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욕구이론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 아니면서도 이른바 경험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인권의 토대로서의 욕구를 강조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적합한 욕구의 목록을 확립할 수 없다면, 인권옹호는 욕구이론을 통해 도움을 받기보다는 손상되기가 쉬울 것이다. 치명적이게도 매슬로우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문화의 힘에 비해 훨씬 약하다"²⁵⁾는 사실을 용인함으로써 욕구를 문화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도넬리는 합의된 일련의 인간의 욕구들을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20) Christian Bay, "Self-respect as a Human Right: Thoughts on the Dialectics of Wants and Needs in the Struggle for Human Community", Human Rights Quarterly 4 (February), p.67

21) Reginald Herbold Green, "Basic Human Rights/Needs: Some Problems of Categorical Translation and Unification", Review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stice 27 (December), p.55

22) Abraham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70), p.iii

23) Johan Galtung and Anders Hekke Wirak, "Human Needs and Human Rights-a Theoretical Approach", Bulletin of Peace Proposals, 8(1977), p.252

24) Jack Donnelly, (2003), pp.28-29

25) A. Maslow, (1970), p. 129

욕구자체보다는 존엄성에 대한 요구, 즉 도덕적 본성이 인권의 원천이라고 보아 인권이 인간의 욕구에 근거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2) 도덕적 본성과 구성주의 인권론

도넬리에 의하면²⁶⁾, 인권의 원천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다. 인권과 기본 욕구와의 관계는 단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인권은 건강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욕구를 박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인권의 원천은 철학적 인간학, 즉 도덕적 인성론으로 소급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인간본성에 관해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견해들과 존엄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인권의 원천을 이룬다.

인권을 뒷받침하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 위상의 것, 즉 본질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과학자들이 보는 인간본성은 인간의 가능성에다 자연의 외적 한계를 설정한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본성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뜻한다. 이에 비해 인권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인간 본성은 일단의 가능성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전략할 수 없는 하한선을 말한다.

인권을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X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X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은 보다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자신의 인권(의 대상들)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정도만큼 그들의 도덕적 본성으로부터 소원해질 것이다.

도덕적 인간본성 이해에 기반을 둔 인권은 사회적 행위의 한계와 요건을 마련해준다. 인권에 의해 지도되는 국가와 사회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시킴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 인권의 요구들은 법률적 및 정치적 실천들을 자체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덕적 본성에 부합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을 산출한다.

인권의 본성과 원천에 대한 이상과 같은 설명을 결합시켜 도넬리는 '구성주의적 인권론'을 제시한다.²⁷⁾ 이에 따르면 인권은 기존의 사실이 아니라 역동적 자기실현의 운동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인간본성은 사회에 앞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획이다. 개인의 본성 또는 성격이 자연적 자질, 사회와 환경의 영향, 개별적 행위 등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빚어지듯, 인간존재는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본질적 본성을 창출한다. 인권은 이러한 자기창조 작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 모델과 일련의 관행을

마련해준다. 인권의 이론과 문서는 현실적 생존의 조건을 넘어서, 즉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실제적인 것'을 넘어서 그와는 다른 가능한 것을 지시한다. 인권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과 관계한다. 인권은 자연적 인격 또는 법률적 인격보다는 도덕적 인격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인권은 권리로서,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덕적 시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한다.

인권은 유토피아적 이상임과 동시에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행동규율이다.²⁸⁾ 실제로 인권은 "네가 어떤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면 네가 인간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인권은 또한 "네가 어떤 사람을 인간으로 대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인권에 관한 목록을 열거한다. 따라서 인권은 자신을 충족시켜가는 도덕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 인권 및 정치사회의 관계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인권이 정치적 사회를 빚으며, 사회는 인간을 빚고, 인간은 인권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인간본성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인권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으로부터 분열 또는 소원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간본성에 관한 도덕적 견해와 존엄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들을 인권의 원천으로 이해하는 구성주의적 인권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설명해주기도 한다.²⁹⁾

첫째, 인권의 불가양도성을 설명해준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상실할 수 없듯 자신의 인권도 상실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건 우리는 단순히 인간임으로 인해 자유와 동등한 존중의 자격이 있다. 인권의 요구들이란 바로 그렇게 대우받길 염원하는 바의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존중, 이행, 강회는 우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해줄 것이다. 대부분의 설명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인권의 불가양도성의 토대는 이로써 명료화된다.

둘째, 구성주의 이론은 사회의 변화를 환기시켜 준다는 인권의 특성에 잘 부합한다. 구성주의에서는 인권의 본성과 원천에 대한 설명이 상보적이다. 예컨대, 인간본성에 관한 도덕적 시각을 촉진시키는 일은 인권의 요구들을 함축한 사회적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마찬가지로 구성주의는 '실제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간의, 도덕적 시각과 정치적 실천 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기도 한다.

셋째, 구성주의 이론은 또한 인권의 보편성과 그것들의 역사적 특수성(개별성) 간의 긴장을 설명해준다. 다른 도덕적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요구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보편적 원리들에 의거해있다. 그러나 인권의 어떤 요구들은 인권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 구성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성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특수성은 인권의 실

26) J. Donnelly, (2003), pp.14-17 및 J. Donnelly, (1985), pp.31-35

27) J. Donnelly, (2003), p.16, J. Donnelly, (1985), p.2

28) Ibid.,

29) J. Donnelly, (1985), pp. 34-35

체를 마련해주는 특성의 철학적 인간학에서의 한계, 개별성 또는 진진으로부터 야기된다. 반면에 인권의 요구들이 갖는 보편성은 인간본성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구성주의 이론은 또한 기워드(Alan Gewirth)와 슈이(Henry Shue)가 기본적, 필수적 또는 일차적 선에 바탕을 둔 인권을 전개시키려는 최근의 노력들과도 양립가능하다. 그들이 구체화시키고 있는 선들, 이를테면 안전, 자유, 생존은 특정한 상황의 철학적 인간학을 표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암스투츠의 도덕적 인성과 정치적 합의

암스투츠(Mark R. Amstutz)는 기존의 도덕적 인권론을 전제한 바탕 위에서 그에 대한 대안적 도전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³⁰⁾ 그에 따르면 우선 인권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원천을 두고 있는 자연권이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자격이 도덕에 근거해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입장을 '도덕적 인권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그 인간성에 의거하여, 달리 말해서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에 의거하여 특성의 이익이나 재화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인권은 인간의 근본적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 국가로부터는 독립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의 정당성은 헌법이나 법률 조항들 또는 국가 및 국제조직들의 특정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또는 도덕적인) 타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임으로 초법률적인 것이다.

현대 세계에 이르러 인권사상이 점차 영향력을 증대시켜왔다. 도덕적 인권론이 17, 18세기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해주었는데 현대세계에서는 다른 대안적 이론들에 의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³¹⁾

그는 첫 번째의 도전적 대안으로 인권을 생리적 기본욕구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또 정당화시키려는 접근법, 이른바 '인간의 욕구론'을 지적한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이 논지에 따르면, 인간은 신체적 생존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데, 이는 그것들이 보장되지 않거나 부재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의 인권 요구들은 생명유지와 개인의 안녕에 대한 욕구에 근거한다.³²⁾ 이 이론은 인간의 생존이라는 뚜렷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어떤 신체적 욕구가 본질적인 것인지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이츠(Charles Beitz)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보다는 분배적 정의에 의거하여 인

권을 정당화하는 '사회정의 인권론'을 전개한다.³³⁾ 이 이론에 따르면, 인권이란 사회정의의 규범들에 입각해 있으면서 인간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권리이다. 그는 고전적 인권론은 권리를 개인의 안녕에 제한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요구들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의 모델이 인권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이츠의 모델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분배정의는 필연코 공동체들의 문화와 역량에 의존해있기 때문에 인권은 맥락에 제약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의 대안적 접근법은 이른바 '구조적 인권론'인데, 이것은 사람이 다른 재화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권리들을 구체화시켜준다. 이 이론의 대표자인 슈이(Henry Shue)에 따르면, 인간은 바람직한 다른 재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권리의 자격을 갖고 있다. 안전, 생존, 자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권리가 기본권리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필연코 다른 원리들보다 더욱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네 번째 접근법인 '사회과학적 인권론'은 범문화적 합의에 의거하여 인권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현대세계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이 고도로 증대되고, 서로 다른 사회들 안에서 관습과 가치가 지니는 역할이 계속하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설령 국제적으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접근법은,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도덕적 주장이 연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위해 절실한 논거를 제공해주질 못한다.

이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로서 암스투츠는 인권의 원천 문제에서는 기존의 도덕적 인성론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실천과 관련해서는 인권사상의 정치적 수용 및 국제인권법의 확대와 강화를 요구한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다양한 이론들, 서로 경합하는 윤리적 및 철학적 정당화들, 인권에 대한 경쟁적 해석들에도 불구하고 현대세계에 있어서는 인권사상에 대한 광범한 정치적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합의는 규범, 규칙, 지침 등의 법제화를 통하여 전개되어온 중요한 국제인권법 체계에서 명백해지고 있다.

4. 패리의 종교적 이해

패리(Michael J. Perry)는 국제인권장전 및 그에 뒤이은 문서들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논의를 개진한다.³⁴⁾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처럼 '국제인권장전'은 세 가지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첫 번째의 '세계인권선언' (1948)은 그 전문에서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것의 제1조에서

30) Mark R. Amstutz, (1999), pp.72-74

31) 개인의 권리라는 고전적 교의에 대한 최초의 주요도전들은 19세기의 E. Burke, J. Bentham 같은 정치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32) Christian Bay, Ibid., pp.53-75

33) Charles R. Beitz,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n Human Rights and U. S. Foreign policy, ed., Peter G. Brown and Douglas Maclea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9), pp.45-63

34) Michael J. Perry, The Idea of Human Rights: Four Inquirie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12

는 “모든 사람은…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국제 인권장전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문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이다. 두 규약의 전문은 공동으로 세계인권선언처럼 “인류가족 모든 성원들의…고유한 존엄성”을 말한 뒤, 인간이 지니는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역설한다. 비엔나 선언 및 UN후원회의 세계 인권회의에 의해 1993년 6월 25일에 채택된 행동프로그램도 “모든 인권은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로부터 유래함”을 주장하여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역적 인권선언인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1948)도 “미주의 인민들은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해 왔으며, …미주의 각주들은 반복하여 인간의 본질적 권리는 그가 특정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 본성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미주선언 전문은 “모든 인간은…서로에 대해 형제로서 행위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의 지역문서인 ‘인권 관련 미주인권 협약 (1978)은 미주선언의 정신을 이어, 그 전문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특정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1986)도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본질적 권리”가 근거해 있는 모든 인간의 타당한 속성(본질)은 무엇인가? 위의 문헌들이 입각해 있는 공통적 확신에 따르면 그러한 본성은 인류가족의 모든 성원이 지닌 고유한 존엄성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 모든 인간은 한 가족의 성원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서로에 대해 ‘형제의 정신’으로 행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한 믿음은 종교적으로 밖에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비종교적(세속적)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러할 수 있다면 그 이해맥락은 어떠한 것일까? 달리말해서, 인권사상의 원천은 불가피하게 종교적이

어서 그 사상의 근본적 구성요소, 즉 모든 인간은 신성한 존재이며,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며, 그 자체 목적이라는 확신이 단연코 종교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어야 하는가?

패리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비종교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는 대표적인



한 사례로 드워킨(Ronald Dworkin)이 주장하고 있는바, 모든 인간은 신성하다는 확신에 대한 세속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³⁵⁾ 드워킨에 따르면, 비종교적인 사람들에 있어서 인간의 신성불가침성은 인간에 관한 두 가지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자연창조의 최고산물이다. 둘째, 발전된 각 인간은 자연의 창조와, 우리가 경이로운 예술작품에서 경탄해 마지않는, 정교한 인간의 창조력과 결합의 산물이다. 따라서 개별인간의 삶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상은 신성함이 지닌 이들 두 가지가 결합되고 또 교차된 토대에 입각해 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은 신성하다는 확신에 대한 드워킨의 세속적 이해의 내용이다. 드워킨이 모든 사람은 신성하다는 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세속적 견해로 드러내는 데 성공한 것인가? 그의 논지에는 중요한 물음에 대한 해명이 빠져있는 것 같다. 어떤 것이 자연과 인간의 협동적 창조의 결과이라는 사실로부터 어떻게 하여 그것은 창조적 결과일 뿐 아니라 신성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과이라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신성한 것이기도 한가? 모든 인간은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통상 모든 인간의 참된 본성(이라고 믿어지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성하기 때문에 (또는 적어도 우리가 그것이 신성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객관적 가치 및 고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드워킨이 자신의 저작에서 가끔 지적하듯 우리가 그것에다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물의 통상적 질서를 뒤집는 것이다. 드워킨은 우리가 약한 또는 주관적 의미라고 부를 수 있는 의미에서—무엇(예컨대 인간의 삶)이 우리 속에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그것에다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의미에서—신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강한 또는 객관적 의미—어떤 것이 신성하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 속에 경탄을 낳아 우리가 그것에다 큰 가치를 부여한다—에서가 아니다. 이로써 알 수 있거니와 드워킨은 모든 사람이 신성하다는 확신은 불가피하게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심을 불식시켜줄 여하한 주장도 제기하지 못하였다.³⁶⁾ 따라서 패리의 주장에 따라, 모든 사람은 신성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장 유효하게 납득시켜 줄 수 있을 입장이 불가피하게 종교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면 인권사상은 단연코 종교적 성격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인간은 신성한 존재라는 종교적 확신이 인권사상의 본질적 및 근본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현실의 도덕들, 다양한 인간 공동체들이 실제로 의존해온 도덕들은 언제나 우주론에 바탕을 두었다. 모든 인간 공동체의 도덕규범들은 인간의 삶과 그 삶이 이루어지

35) Ronald Dworkin,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1993, pp.82-83. Michael J. Perry, (1998), pp.26-27

36) “모든 인간은 신성하다”는 확신에 대한 세속적(비종교적)이해의 부적합성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Michael J. Perry, Ibid., pp.16-25 참고

는 세계에 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신성한 존재라는 믿음은 우주론적 바탕, 즉 종교적 우주론에 의거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자.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유대-기독교적 견해에 따르면 타인(국외자, 나그네, 이방인) 역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또는 우리의 부족·국가·인종·종교의 성원들과 같이 신의 자녀이며 따라서 서로 자매/형제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타인 역시 신의 자녀이며 따라서 우리는 서로 자매/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아직 왜 내가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가는 문제로 남는다. 특히 내가 왜 나의 자매 또는 형제인 사람의 안녕에 대해 마음을 써야 하는가?³⁷⁾ 종교적 이해에 의하면 자신의 자매와 형제의 안녕에 마음 쓰는 일은 자신의 진정한 번영을 이룩해주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된다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에 있어 기본 소신이다. 그러한 체험에 입각하여 자신의 자매 및 형제와 사랑으로 연결된 삶은, 그 정도만큼, 번영하는 삶이며, 자신이 자매 및 형제로부터 소외되어 사랑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 삶은, 그 정도만큼, 고갈되어 가는 삶이다. 인간적 선에 관한, 즉 직접 온전한 인간으로 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삶에 있어 실질적이며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삶이 깊은 의미를 지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 같은 확신은 우리의 삶의 근본토대이다. 종교적 확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별다른 반응을 낳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자신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행복에 관한 관심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나의 자매/형제인가? 달리 표현하여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에 대한 응답 역시 종교적인 것으로서 타인들 또한 가장 깊은 의미에 있어, 즉 신의 자녀로서 나의 자매/형제라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존재는 자아와 타인 간의 심원한 혈족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믿음의 뚜렷한 사례를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권리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패리에 있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인권사상의 원천은 분명코 종교적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인권사상에 대한 세속적 견해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 인간이 신성하다는 확신은 종교적인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종교적 이해에 의거하지 않고도 아주 진지하게 인권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도 역시 인권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것, 그들 역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37) Michael J. Perry, Ibid., p.17에서 재인용, Michael J. Perry, Ibid., pp.18-19

5. 원천/토대 문제

지금까지 논자는 인권의 원천/토대에 관한 몇 가지 경쟁적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권을 인간행위의 필요조건에다 정초시키는 기워드, 도덕적 본성관에 의거하여 구성주의 인권론을 전개하는 도넬리, 인권의 원천문제에서는 도덕적 인권론을 옹호하면서 정치적 실천과 관련해서는 인권사상의 정치적 수용 및 국제인권법의 확대와 강화를 요구하는 암스튜츠, 인간의 존엄성(신성함)의 토대를 종교적으로 입론화 하는 패리 등의 시각이 서로 달라, 논자는 인권을 위한 통일된 하나의 토대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것에 대한 설명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토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도넬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³⁸⁾, 흔히 사람들은 실질적 의미에서 토대란 사회적 관습이나 혹은 이성적 선택을 ‘넘어서 있는’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토대는 합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면 인권은 여하한 토대도 갖지 않는다. 논자가 볼 때 일정한 토대에 의거하지 않는 인권 개념이란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공통의 불평은 다소간 진실일 뿐이지 전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인권의 원천과 관련시켜 볼 때 강력한 근거를 가져 이론준립에 하등의 취약점이 없었으면 하는 것은 오직 기대의 사항에 속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협약’에 의존할 성질의 것이다. 달리 말해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는 입증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합의’ 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를테면 인권의 토대가 되는 근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특정의 논거, 규칙 또는 관행을 보다 심층적인 원리들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도덕적 신념과 실천을 위한 이성적 확신을 마련해 주는데, 거기에 이르는 실질적 과정은 합의 의존적이라는 것이 논자의 중심 입장이다.

인권은 그 바탕에 있어 인습적이며 또한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너무 과장해서도 안된다. “실질적으로 인권개념이 포괄하는 모든 것은 논쟁거리들이다. …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유해야만 하는 이념인 ‘권리’는 그 자체 논의의 여지가 많은 것이며, 또한 권리는 전적으로 개개인이 지니는 공통의 인간성에 의하여 개인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특히 강력한 비판의 대상”³⁹⁾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결정에 의거하며, 이들 권리(인권)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적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마음으로 그리는 세계를 실제의 세계로 이룩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실이 인권을, 그때그때의 선택에 의거한다는 의미에서, 자의적이라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권이란 영국에서 좌측 방향을 요하는 것과 같이 단

38) J. Donnelly, (2003), p.18

39) Chris Brown, “Universal Human Rights: A Critique”. in Human Rights in Global Politics, ed., by Tim Dunne and Nicholas J. Wheel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103. Jack Donnelly, Ibid., p.20에서 재인용

순히 관례적인 것도 아니다. 모든 사회적 실천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은 정당화를 요구한다. 그러한 정당화는 궁극적으로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또는 전제의 문제인 원천/토대에 호소한다. ‘순환성’ 또는 ‘취약성’은 인권에만 특이한 것이 아니고 모든 도덕개념과 도덕적 실천에 공통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원리와 실천뿐만 아니라 다른, 심지어는 경쟁적인 원리와 실천들에도 나름의 좋은 근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경쟁적이며 논의의 여지가 많은 원리들에 직면하여 우리는 그것들과 대비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심문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⁴⁰⁾ 토대가 되는 전제로부터 특정의 결론으로 상승하고 또 특정의 실천으로부터 되돌아 근원으로 내려가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애매한 것으로 남아있었던 근본전제들의 의미함축을 탐구하고 동시에 특정의 판단들이나 실천들이 합리적인지 또는 잘 정당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도덕적 진보가 가능해진다. 설령 그 진보가 궁극적으로 협약에 의거하는 일련의 근본전제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해에 의거하여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 개괄되어 있는 인권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의 훌륭한 도덕적 및 정치적 이유들을 들 수 있다. 서 있는 입장의 차이로 말미암아 논거와 이유는 서로 다르더라도 결과적 정당화는 같아질 수 있는 법이다.

IV. 맺는말

점차 인권이라는 용어의 활용과 실천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도넬리의 말처럼 오늘날 인권은 일종의 ‘패권적 이념’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과연 인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은 평등한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보편적인 권리이다. 더욱이 “현대인권이론이 지향하는 인권은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인간의 역량을 자력화하고, 인간을 활짝 피게 만드는 규범적 포부로서의 인권이다.”⁴¹⁾

오늘날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인권개념의 중심내용은 두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 및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이 고유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살아가야 한다, 달리 말해서 사람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은 사람에 대해 규범적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를 하나로 통합시켜 표현하자면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며 그것은 침해할 수 없는 것, 즉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40) J. Donnelly, (2003), p.21

41) 조효제,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56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이 개개인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지위 또는 기타의 신분”⁴²⁾과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임을 뜻한다.

인권개념의 이해와 관련하여 인권의 ‘가치’ 뿐만 아니라 그 ‘한계’ 까지를 가능한 한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이 좋은 정부의 최소기준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공통적 견해이나, 더 나아가 인권개념이 정치철학의 포괄적 기준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최소기준을 뒷받침하는 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정치적 성격은 철학적 의미함축을 갖는다. 인권연구를 주도하는 법률가들은 명시적으로나 또는 암묵적으로 법실증주의 철학에 의존한다. 그것에 의하면 인권이란 인권법이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또 해석된다. 다른 한편 인권에 대한 법실증주의적 접근법은 인권의 성격을 잘못 밝힐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의미함축을 갖기도 한다. 인권의 요점은 역사적으로 인권을 위반하는 법적 당국과 그 법률들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에 호소하는 것과 자신의 인권에 호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일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법과 국내법에는 인권개념이 많이 도입되었으나 인권개념은 언제나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법률이 물론 중요하지만 인권이해는 이전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하여 법과 정치가 인권분야 전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이 지닌 문제점을 살피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는 다른 사회과학들, 이를테면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등도 본질적인 것이다. 인권은 우선적으로 학제적 개념이다.

참고문헌

-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 조태훈, “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75호
-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 Amnesty International 1993: 2
- Amstuts, Mark R. International Ethic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9
- Bay, Christian, “Self-respect as a Human Rights: Thoughts on the Dialectics of Wants

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6조

and Needs in the Struggle for Human Community” . Human Rights Quarterly 4 (February)

- Beits, Charles 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n Human Rights and U. S. Foreign policy, ed., Peter G. Brown and Douglas Maclea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9)
- Donnelly, Jack, The Concept of Human Rights,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85
- Donnelly, Jack,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 Practi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 Dunne, Tim and Nicholas J. Human Rights in Glob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Freeman, Michael, Human Rights, Cambridge: Polity, 2008
- Gewirth, Alan, Human Right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Gewirth, Alan, Reason and Morali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Griffin, James, On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Ishay Micheline R. The History of Human Rights,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조효제 옮김,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08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Notre Dame, INC: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Maslow, Abraham,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70
- Miller, Fred, Nature, Justice, and Rights: in Aristotele’ s Politics, Oxford: Clarendon Press, 1995
- Perry, Michael, The Idea of Human Rights: Four Inquirie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Perry, Michael, Toward a Theory of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Rummel. R. J, Death by Governmet,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4
- Tierney, B. The Idea of Natural Right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7

● 투고일 : 2011. 01. 27/심사일 : 2011. 01. 30/게재확정일 : 2011. 02. 05